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
### 1. 제안 이유

연구원, 학교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·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,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### 2. 주요 내용

해당 연도에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전문적인 자격·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율이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'100분의 70 이상'인 경우에서 '100분의 50 이상'인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(제6조 제2항 제3호).

### 3. 다운로드 : [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\(2019. 9. 10. 시행\)](#)